제1315호
2012. 2. 23(목)

발행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집인 : 홍 보 관 광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55

영등포구보

입법예고

• 제18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공 고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12-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8

인사발령

• 2012. 2. 6 ~ 2012. 2. 21일자 ·····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개→영등포행정→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02)2670-7555 / 전송 :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185-0008-2012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2-18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으로 이관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율 등 조례위임사항을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지방공사 등·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면규정 삭제

나. 조례로 위임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100%)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규정하고 감면조례의 인용법규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부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부과과 (☏2670-3251, FAX 2670-3623)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0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

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0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지방세특례제한법」에――――――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 략)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생 략)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행과 같음)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생 략)	<삭 제>
제13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생 략)	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생 략)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5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생 략)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 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제10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생 략)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과 같음)
	<삭 제>
보 칙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생 략)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생 략)	제13조(감면 제외대상)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생 략)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
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생 략)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 (생 략)	제1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공 고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12-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처분당사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영등포소방서장

○공고기간 : 2012.02.23~2012.03.07(14일간)
○공고내역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대상 행정처분(사용정지15일) 사전통지		
2.당사자	성 명 (명 칭)	배기인 (이동탱크저장소 - 서울85나4487)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1가 255-57번지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설치자의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는 당산동주차장(당산2가 160-2)으로 설치허가 되었으나, 당산동주차장(상치장소)과의 계약만료기간이 2011년 1월이었고, 본 주차장은 2011년 11월 19일자로 폐쇄되었음을 확인한바, 관련법규에 부적합하게 저장·취급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용정지(15일)		
5.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제12조제①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2(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1차		
6.의견제출	기관명	영등포소방서	부 서 명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99) 『☎02) 2678-1705』		
	기 한	2012. 03. 27. 한		

인사발령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 제20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김 정 란 (72.05.13)	복직을 명함 부과과 근무를 명함			행정국		지방세무 주사보

(발령연월일 : 2012년 02월 06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 제22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지 현 준 (81.06.04)	지방시설서기보(건축)시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주택과		실무수습

(발령연월일 : 2012년 02월 06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 제24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김 인 익 (69.04.24)	복직을 명함 부동산정보과 근무를 명함			행정국		지방지적 주사보

(발령연월일 : 2012년 02월 09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 제26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정 신 애 (78.06.24)	복직을 명함 행정국 근무를 명함			행정국		지방행정 서기

(발령연월일 : 2012년 02월 13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 제27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하 은 영 (74.05.27)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연장) (2012.02.14부터 2013.02.13까지)			행정국		지방약무 주사보

(발령연월일 : 2012년 02월 14일자)

4급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발령번호 : 제28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서	직위	직 급
1	배 광 환 (60.08.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입을 명함 도시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지방기술 서기관(토목)
2	박 상 돈 (62.12.30)	서울특별시 전출을 명함			도시국	국장	지방기술 서기관(토목)

(발령연월일 : 2012년 02월 15일자)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인사발령(근무명령 해제)

<발령번호 : 제31호>

일련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위(호봉)	직 급	부 서	직위	직 급
1	강 성 권 (68.06.28)	주차문화과 근무를 명함			총 무 과		지방행정주사보
2	이 규 상 (71.02.20)	신길제1동 근무를 명함			영등포동		지방행정주사보
3	김 기 순 (54.06.13)	의약과 근무를 명함			건설관리과		기능6급 지방사무실무장
4	유 흥 식 (66.05.05)	감사담당관 근무를 명함			신길제1동		기능8급 지방조무원
5	이 광 숙 (68.12.14)	총무과 근무를 명함			기획예산과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
6	제 향 순 (74.02.26)	민원여권과 근무를 명함			대림제1동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
7	박 희 양 (61.02.28)	건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총 무 과		기능8급 지방운전원

(발령연월일 : 2012년 02월 21일자)